

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'우수디자인 공동주택'이라 함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,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"주거생활향상 및 주거복지실현"을 "주거생활향상,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"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 (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)

- ①시장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②자치구청장과 SH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~6. (생략)	제2조 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~6. (현행과 같음) 7. '우수디자인 공동주택'이라 함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.
제3조 (시의 책무) ① (생략)	제3조 (시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 (시민의 노력 등) ① (생략) ②----- <u>주거생활향상 및 주거 복지 실현</u> ----- -----	제4조 (시민의 노력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주거생활향상, 주거 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</u> ----- -----
	제8조의2 (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) ①시장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②자치구청장과 SH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